[서식 예] 부동산 분양계약 명의변경금지 가처분신청서



부동산분양계약명의변경금지가처분신청

채권자 〇〇〇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무자 ◇◇◇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제3채무자 주식회사 ■■건설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대표이사 ■■■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.

피보전권리의 내용 분양권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권

목적물의 가격 ㅇㅇㅇ워

신 청 취 지

- 1.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권의 매매, 증여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2.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신 청 이 유

- 1. 채권자는 2000. O. O.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분양 받은 별지 목록 이 부동산분양권을 금 000원에 매수하여 계약당일에 금 000원을 지하고 잔금은 2000. O. O. 분양권명의변경신청을 할 때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.
- 2. 채권자는 20〇〇. 〇. 〇. 분양권명의변경신청일에 잔금을 준비하여 채무자와 만나 기로 한 제3채무자의 주소지에 나갔으나 채무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.
- 3. 그 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잔금의 수령 및 분양권명의변경의 협조를 여러 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, 채무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고 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.
- 4. 따라서 채권자는 잔금을 귀원에 공탁하고 부동산분양권명의변경이행의 소를 제 기하려고 하나 급히 가처분하지 아니하면 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 가능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.
- 5. 한편, 이 사건 부동산분양계약명의변경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 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,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 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소 명 방 법

1. 소갑 제1호증 약정서

1. 소갑 제2호증 분양계약서

1. 소갑 제3호증 분양광고안내

첨 부 서 류

1. 위 소명방법 각 1통

1.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0. 0.

위 채권자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귀중



부동산의 표시

2.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 건물의 번호 101-4-405
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
 면 적 39.60㎡

지층 454.98 m²

- 3.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OO OO구 OO동 OOO 대 39,883.1 m²
- 4.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39,883.1분의 29.734. 끝.

ગો ઢાં મો દો	본안의 관할법원 또는				
제출법원	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 관련법규 을 관할하는 지방법원	민사집행법 제300조 💈 💹	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(부동산목록 5부정도 첨부)				
불복절차 및 기간	(채권자) ·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(민사집행법 제301조, 제281조 제2항) ·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(민사소송법 제444조) (채무자) ·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(민사집행법 제301조, 제283조), 본안의 제소명령(민사집행법 제301조, 제287조) 등				
	•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저 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• 변경을 제든지 할 수 있음. 가처분명령이 발려 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 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.	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 경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 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			
비 용	·인지액: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) ·송달료: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		
기 타	・토지의 목적물가액 : 개별공시지가/m²×면적×30/100(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9조 제2항) ・건물의 목적물가액 : (☞건물시가 표준액 산출방법)				

※ 집행절차

가처분신청	→ 2~3일후	담보제공명령서 수령(공탁명령)	→ 5일내	보증보험사와 지급 보증위탁계약체결 ※ 지참서류등 1. 가처분신청서사본 2. 주민등록표등본 3. 담보제공명령서 4. 인감증명 및 도장 ※ 온라인계약체결가능	→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

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(보험증권앞면 사본수통첨부)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가압류, 가처분